

#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1997. 4. 26.

총무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7년 2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4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97. 2. 21.) 상정, 질의토론 심사, 보류  
제4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97. 4. 24.) 상정, 질의토론 심사  
제4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97. 4. 26.) 상정, 질의토론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이 은 규

가. 제정이유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고, 공공성과 수익성 있는 사업을 경영하프로서 마포구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쟁력과 효율성을 갖춘 마포개발공사의 설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1) 사업내용

- 개발관련 수익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주민복지 증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구가 위탁하는 사업

2) 자본금

○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되, 구에서 전액 출자하고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3) 임원 및 직원

- 사장 : 서울시장 승인후 구청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이사 및 감사 : 구청장 승인후 구청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각 3년, 2년으로 한다.
- 직원의 임면 : 정관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 이사회 :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재무회계

- 사업년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매 사업년도의 결산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감독

- 구청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공사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의 재정확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마포개발공사의 설립목적 및 업무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임.

○ 안 제4조제1항의 자본금에 관한 규정중 공사자본금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자본금에 관한 규정이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7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기타위탁자의 사업도 공사가 대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한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위탁계약에 의해서 제3자에게 대행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3조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8조에서는 조문내용을 감독권자인 구청장의 승인사항으로 동 조례에서 정하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안 제21조제2항에서는 회계검사를 회계감사로 자구를 정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4조의 지방비부담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과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사료되며, 지방공사에는 안 제26조에 규정된 보조금이나 장기대부에 의해서 재정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8조제4항에서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5항에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는 바,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마포개발공사가 설치되므로서 동 공사의 설치목적인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구의 재정확충에 기여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공사설립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쓰레기 대량 발생으로 인한 환경문제, 수송차량등으로 인한 교통문제등의 제반문제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종열 위원) : 임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는 지?
- 답변요지(이은규 기획예산담당관) : 본 조례 통과후 예규로 작성하게 됨.
- 질의요지(김종열 위원) : 인사에규안이 현재 정해졌는지?
- 답변요지(이은규 기획예산담당관) : 현재 인사에규에 대한 표준안이 없음
- 질의요지(김종열 위원) : 공사설립을 하게 되면 공공성보다는 수익면을 중요시하여야 하는데, 수익성 보장에 대한 복안이 있는 지?
- 답변요지(이은규 기획예산담당관) : 수익성이 보장될 것으로 보며, 그 이유는 산업개발연구원 연구결과가 나와 있고, 공사 직원은 가급적 채용을 하지 않고 청소인력, 주차장관리인력, 경비인력은 구청직원을 파견 근무토록 하는 등의 방법을 택해 공사직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채용, 인건비등의 예산을 절약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계획임.

- 질의요지(김세창 위원) :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물 가사용 승인일은 언제인가?
- 답변요지(유병식 산업과장) : 가사용 승인일자는 '97년 2월임.
- 질의요지(이진표 위원) : 농수산물 유통센터 임대보증금이 없고, 매출액의 3%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하였는데 임대할 용의는 없는지?
- 답변요지(유병식 산업과장) : 임대하게 되면 전패 등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급자 계약방식을 채택할 계획임.
- 질의요지(이진표 위원) : 공사설립으로 서부간선도로변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요지(유병식 산업과장) :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비혼잡 시간대인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시간을 정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용역회사에서 수거토록 함.
- 질의요지(이진표 위원) : 적자운영이 계속될 경우의 책임소재는?
- 답변요지(유병식 산업과장) : 공사운영은 사장의 경영방침에 좌우된다고 보며, 본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위치적으로 가장 유리한 지역에 위치해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주민이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의 시간대로 조정할 용의는?
- 답변요지(이은규 기획예산담당관) :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적극 검토 반영하겠음.
- 질의요지(한수균 위원) : 지방공사설립은 일단 보류하고, 당초 계획대로 직영할 용의는?
- 답변요지(이은규 기획예산담당관) : 직영시 공무원 정원 동결로 마포구의 현재 정원내에서 필요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나, 구청직원을 농수산물 유통센터 운영에 투입할 경우 구청 본연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며,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 현실적으로 지방공사설립으로 적자운영이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답변요지(이은규 기획예산담당관) :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의요지(심재창 위원) : 사업성 여부 검토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사설립을 추진해야 하는 데 서두르는 감이 있음. 앞으로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공사 임직원의 자세도 재정립해야 함.
- 답변요지(이은규 기획예산담당관) : 공사가 잘 운영돼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 별 첨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안)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교통문제, 쓰레기발생문제, 수익성문제 등의 해소방안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설립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

9. 기타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179
----------	-----

제안년월일 : 1997. 4. 26.

제안자 : 총무재무위원장

### 1. 수정이유

- 조례안중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마포구 지역 실정에 맞게 정비코자 함.

### 2. 수정주요골자

- 정관에 공사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13호)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7조제2항)
- 지방비 부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

##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중 "구가 전액 출자한다."를 "설립자본금은 25억원 이상으로 하며, 구가 전액 출자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동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공사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중 "못하며, 상임임원은"을 "못한다. 단, 상임임원은"으로 하고,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를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중 "공사의 이익과 사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하고, "상반되는 사항에"를 "공사의 이익에 상반되는 경우에"로 한다.

안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사업의 대행)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상호 위탁계약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안 제18조중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로 한다.

안 제21조제2항중 "검사"를 "감사"로 한다.

안 제24조를 삭제하고 제25조 내지 제36조를 제24조 내지 제35조로 한다.

안 제28조제4항중 "정관으로"를 "별도조례로"로 한다.

안 제33조제1항중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을 "그 결과에 따라 사장의 면직등 필요한"으로 한다.

안 부칙 제3조제1항중 "한다."를 "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되, <u>구가 전액 출자한다.</u>	제4조(자본금) ①----- -----, <u>설립자본금은 25억원이상으로 하며, 구가 전액 출자한다.</u>
제5조(징관) ① 생략 1. ~ 12. 생략 <u>(신설)</u> 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징관) ① (원안과 같음) 1. ~ 12. (원안과 같음) <u>13. 공사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u> 14. (원안 제13호와 같음)
제10조(임·직원의 겸업금지) <u>공사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몰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u>	제10조(임·직원의 겸업금지) ----- ----- ----- <u>못한다. 단, 상임임원은</u> ----- ----- <u>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u>
제12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u>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u>	제12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u>공사의 사장</u> ----- ----- ----- <u>공사의 이익에 상반되는 경우에</u> ----- ----- -----
제17조(사업의 대행) ①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제17조(사업의 대행) <u>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상호 위탁계약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u>
②공사는 제1항 사업의 대행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삭제





원 안	수 경 안
<p>제28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 ③ (생략) ④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정관으로</u> 정한다</p> <p>제29조 ~ 제32조 (생략)</p> <p>제33조(경영평가) ① 구청장은 매년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1회 이상 실시하고, <u>그 결과에 따라</u>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34조 ~ 제36조 (생략)</p> <p>부 칙</p> <p>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7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 ③ (원안과 같음) ④ ----- -----<u>별도 조례로</u>-----.</p> <p>제28조 ~ 제31조 (원안제29조~제32조와 같음)</p> <p>제32조(경영평가) ① ----- -----, <u>그 결과에 따라</u> 사장의 면직 등 필요한-----.</p> <p>② ~ ③ (원안과 같음)</p> <p>제33조 ~ 제35조 (원안제34조~제36조와 같음)</p> <p>부 칙</p> <p>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 ----- ----- ----- -----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p> <p>② ~ ③ (원안과 같음)</p>